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장애인복지과)
- 제출일 : 2025. 11. 14.
- 회부일 : 2025. 11. 18. (의안번호 : 25-143)

2. 제출이유

- 장애아동과 지역주민에게 의료재활·직업재활·교육·체육·문화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 「마포구 상암동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운영 실시협약(마포구↔재단법인 푸르메, 2014. 1. 29.)

2) 필요성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과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 효율성 제고
- 다양한 복지 수요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다.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 등

- 1)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2)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관리 일체
- 3)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

## 라. 위탁시설 개요

- 1) 소재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1738)
- 2) 시설규모: 지하 3층/지상7층, 연면적 18,571.72m<sup>2</sup>
- 3) 위탁대상시설

시설유형	시설명	전용면적(m <sup>2</sup> )	운영인력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푸르메재단 네슨어린이재활병원	6,557.05	196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포푸르메장애인직업재활센터	433.37	5명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1,445.92	18명
도서관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391.86	2명

※ 공용 면적(주차장, 기계실, 화장실, 복도 등): 9,743.52m<sup>2</sup>

## 4) 층별현황

층별	용도	면적(m <sup>2</sup> )	비고
계		18,571.72	
7층	식당, 옥상정원	719.47	
6층	낮병동(150병상), 놀이터	1,626.93	
5층	입원병동(38병상), 놀이터	1,626.93	
4층	치료실 등	1,463.17	
3층	체육관, 다목적실 등	1,750.78	체육시설 등
2층	재활치료실 등	1,745.10	
1층	어린이도서관, 검사실, 일반진료, 카페 등	1,475.96	어린이도서관 등
지하1층	체육시설(수영장), 문화교실, 사무실 등	2,655.79	체육시설 등
지하2층	직업재활센터, 보조기기실, 주차장	2,772.75	직업재활시설 등
지하3층	주차장, 방제센터, 기계실	2,734.84	

## 5) 위치도 및 전경



마. 민간위탁기간: 2025.12.30.~2030.12.29.(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유재산법에 따른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에 의거  
사업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재단법인 푸르메에 최장 20년  
무상 사용 허가함

※ 2015. 12. 30.~2035. 12. 29.(20년) 위탁계약은 무상사용

·허가기간 범위내에서 자동 연장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5년 기준)

1) 소요예산: 2,538,176천원

(시비 2,037,036천원, 구비 501,140천원)

2) 산출내역

(단위: 천원)

시설명	예산액	지원내용	비고
계	2,538,176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1,739,3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246,113</li> <li>- 운영비: 1,493,279</li> </ul>	시비 83% 구비 17%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410,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290,532</li> <li>- 운영비 및 사업비: 120,294</li> </ul>	시비 93% 구비 7%
마포푸르메장애인직업재활센터	256,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236,284</li> <li>- 운영비: 19,734</li> </ul>	시비재배정 구비50,000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131,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84,608</li> <li>- 운영비 및 사업비: 47,332</li> </ul>	구비 100%

###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 2) 이 시설의 건물을 기부채납한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과 유지관리의 권한·권리를 부여한 협약의 연속성과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 마포구 상암동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운영 실시협약, 마포구-재단법인 푸르메(2024. 1. 29.)
- 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자. 기타 민간위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 1) 수탁자 성과평가 실시 완료: 2025. 9. 29.(월), ‘우수’
- 2)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서 검토 후 재계약 체결: 2025. 12월 중

##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장애아동과 지역주민에게 의료재활·직업재활·교육·체육·문화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마포 푸르메 스포츠센터, 마포 푸르메 직업재활 센터)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 12. 29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81조(비용보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어 관련규정과 상충됨이 없고, 시설의 건물을 기부채납한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 운영과 유지관리의 권한·권리를 부여한 협약의 연속성과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효율성 제고 및 다양한 복지 수요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장애인 복지과	김희선 (8880)	이승익 (1681)

## 참고자료

### 1.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 ·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